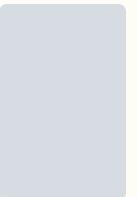


# 알기 쉬운 한·미 FTA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의 흐름  
한·미 FTA



##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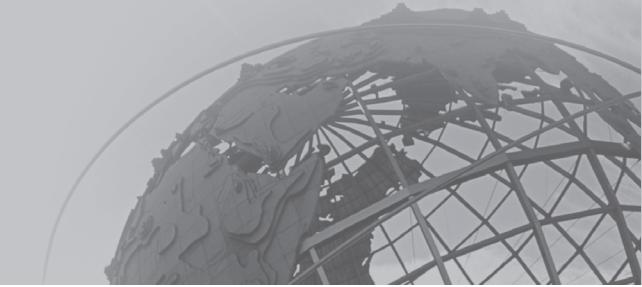
I. 한·미 FTA 주요내용	4
II.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	8
(참고) 기 발효 FTA의 성과	12
III.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21
(1) 농축수산업	21
(2) 중소기업·소상공인	37
(3) 제조업	41
(4) 의료·제약	48
(5) 서비스	52
(6) 소비자	58
(7) 청년층·근로자	65
(8) 기타(ISD 등)	70

# 한·미 FTA 주요내용





## 한·미FTA 주요내용



### 1 원협정('07.4월) 주요 내용

- 한·미 FTA는 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
  - \*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 (공산품) 양측 모두 5년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통해 공산품의 수출 기반 확대
  - \* 우리측 : 5년내 96.1%, 미국측 : 5년내 94.9%
- (농수산물)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세이프가드 도입 등 예외적 취급을 통해 민감성 반영
- (서비스)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 제고
  - \*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유보, 사업서비스 등은 단계적·부분적 개방

#### ① (공산품) 양측 모두 대부분 품목에 대해 5년내 관세철폐

- ▶ 우리 : 3년내 94% 수준, 5년내 96.1%
- ▶ 미국 : 3년내 92% 수준, 5년내 94.9%

#### ② (농수산물)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를 확보

- ▶ 양허제외(쌀), 계절관세 도입(포도, 칩용감자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 30개 품목) 등
- ▶ 사과, 배,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감귤 등 민감품목은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 ▶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위주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기 철폐
  - \* 즉시철폐 비중 : 품목수 기준 37.9%, 수입액 기준 55.8%

#### ③ (서비스 및 투자)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및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도 포괄 유보
- ▶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회계·세무)는 단계적으로 개방
  - \* 법무서비스 분야는 3단계, 회계·세무 분야는 2단계로 개방
-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70년) 등 지재권 보호 강화
- ▶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PP)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49%)은 유지하되 간접투자 제한(49%) 철폐(발효 후 3년내)
-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수준(49%)을 유지하되, 국내설립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협정발효 후 2년내)
  - \*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 SKT는 제외
- ▶ 금융서비스는 비대면방식에 의한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 등 제한적으로 일부 시장을 개방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도록 세이프가드 제도 명시

#### ④ (기타) 각종 선진제도 도입

- ▶ (무역구제) 반덤핑/상계관세 견제 장치\* 확보
  - \* 조사개시전 사전 통지 및 협의, 가격약속 또는 사전물량 합의제도 활성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
- ▶ (개성공단)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구체적 장치\* 마련
  -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등에 대한 별도 부속서 챕터

## 2 추가협상('10.12월) 주요 내용

### ①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

품목	적용	기존협정	추가협상
자동차	승용차	미국 • 관세 2.5% - 3000CC 이하 즉시철폐. - 3000CC 초과 3년 철폐  한국 • 관세 8%, 즉시철폐	• 발효후 4년간 유지 후 관세철폐  • 발효즉시 4% 인하 • 4년간 유지후 철폐
	전기차	미국 • 관세 2.5%, 10년철폐  한국 • 관세 8%, 10년 철폐	• 5년간 균등철폐  • 발효즉시 4%로 인하 - 4년간 균등철폐
	픽업트럭	미국 • 관세 25%, 10년 철폐	• 10년 철폐 유지 단, 발효 8년차부터 균등철폐
	세이프가드	공통 -	•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요소 반영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
	안전기준	한국 • 6,500대 미만 제작사에 한해 미국과 한국기준 중 선택적 사용	• 제작사별 25,000대 까지 미국기준 총족시 완전동등성 인정
냉동돼지고기	한국	• 관세 25%, 2014.1.1일 까지 관세균등철폐 ※ '12년 발효가정 관세철폐일정 - 16.7%(12년)→8.3%(13년)→0%(14년)	• 냉동기타 목살, 갈비살(25%)에 대해 '12년부터 관세 감축하여 '16.1.1일 관세 철폐 ※ ('12)16%→('13)12%→('14)8%→('15)4%→('16)0%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한국	• 18개월 간 연계의무에 대한 분쟁을 제소 할 수 없도록 함	• 36개월간 이행의무 자체를 유예

### ② 합의의사록

품목	적용	합의 내용
자동차연비·CO <sub>2</sub> 기준	한국	• 제작사당 2009년 판매대수 기준으로 4,500대까지 19% 완화된 기준 적용 • 미래규정(2016년 이후) : 추후 협의
기업내전근자비자	미국	• 기존 사업체 근무자를 위한 비자 유효기간을 3년→5년으로 연장 • 사업체 신설을 위한 근무자를 위한 비자유효기간을 1년→5년으로 연장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



##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

### 1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 재분석

■ (성장·고용) 한·미 FTA 이행은 장기에 우리경제의 실질 GDP를 5.66%, 소비자 후생을 321.9억\$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취업자는 장기에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

	교역 증대 및 지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	
		생산성 증대 미고려(중기)	생산성 증대 고려(장기)
실질 GDP(%)	0.02	0.48	5.66
후생 수준(억\$)	5.3	25.5	321.9
고용(천명)	4.3	40.6	351.3

■ (무역수지) 향후 15년간 대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7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대미 연평균 1.4억\$ 흑자 확대)

	무역수지 (15년 연평균, 백만\$)	제조업	농업	수산업
대세계	2,765	3,029	△264	-
대미	138	573	△424	△11.0

■ (외국인 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 개선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향후 15년간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가 30.3억\$로 크게 늘어나고, 대미 무역수지도 연평균 5.7억\$ 증가

구 분	분석결과	
대세계 (15년 연평균, 백만\$)	수 출(A)	3,167
	수 입(B)	138
	무역수지(A-B)	3,029
대미 (15년 연평균, 백만\$)	수 출(A)	1,285
	수 입(B)	711
	무역수지(A-B)	573

▶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8조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합 계 (억원)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일반기계	화학	철강	기타
87,691	28,813	20,490	3,006	5,607	9,007	5,073	15,695

■ (농수산업) 향후 15년간 농수산업 부문 대미 수입은 연평균 4.4억\$ 증가하고, 국내 농수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 수준으로 전망

구 分	농업	수산업	합계
대미 수입 증가(15년 연평균, 백만\$)	424	11.7	435.7
생산 감소(15년 연평균, 억원)	8,150	295	8,445



##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

### ■ (서비스업) 방송은 소득이 감소하나 PP시장 · 통신은 증가

- ▶ (방송) 방송쿼터 축소에 따라 영화 · 애니메이션산업의 소득 감소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51.9억원 수준으로 분석
- ▶ (PP시장 개방)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3억원 증가하고 소득은 연평균 90억원 증가 예상
- ▶ (지재권 보호기간 연장)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할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89억원 발생할 전망
- ▶ (통신시장 개방)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710억원, 소득은 31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

구 분	분석결과
•(방송) 소득 감소(15년 연평균, 억원)	51.9
•(PP시장 개방)	생산 증가(15년 연평균, 억원)
	323.2
	소득 증가(15년 연평균, 억원)
	89.8
•추가 지불 저작권액(20년 연평균, 억원)	89.4
•(통신시장 개방)	생산 증가(15년 연평균, 억원)
	710
	소득 증가(15년 연평균, 억원)
	310

### ■ (제약업) 對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증가하고, 수출은 334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 확대

- ▶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1,197억원 감소, 소득은 457~7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분석결과
對미 무역수지(10년 연평균, 만\$)	△1,590
생산감소(10년 연평균, 억원)	686~1,197
소득감소(10년 연평균, 억원)	457~797

## 2 추가협상의 영향 분석('11.8) 결과

### ■ (분석결과) 추가협상으로 협정내용이 일부 변경된 자동차 등 3개 분야의 경제적 영향을 '07년 원협정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연간 406~459억원 수준 감소

합 계(연간)	자동차 (무역수지)	돼지고기 (생산액)	의약품 (매출액)
(-) 406~459억원	(-) 573억원	(+) 70억원	(+) 44~97억원

### ■ (평가)

- ①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
- ②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
  - 최근의 對미 자동차부품 수출 급증 추세에 더하여 중소 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생산 · 수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
- ③ 자동차는 관세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늦어졌을 뿐 5년차부터는 원협정과 동일한 對미 수출증가 효과가 나타남
  - 추가협상을 반영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연간 5.59억\$)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연간 4.88억\$ 증가
- ④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 · 미 FTA 비준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
  - \* 대한상의는 한 · 미 FTA 지연시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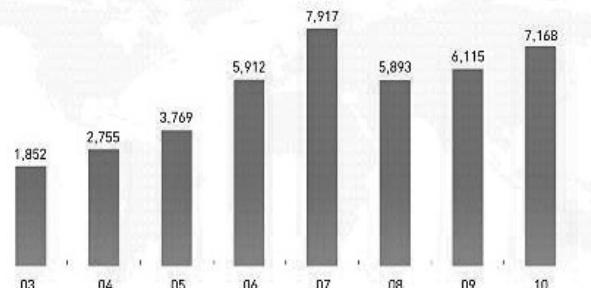
## 한·칠레 FTA



## 7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약 4배나 늘었습니다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 증가로 한·칠레 FTA 발효(2004. 4. 1) 이후 7년간 양국간 교역량은 18.5억 달러에서 71.7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칠레 양국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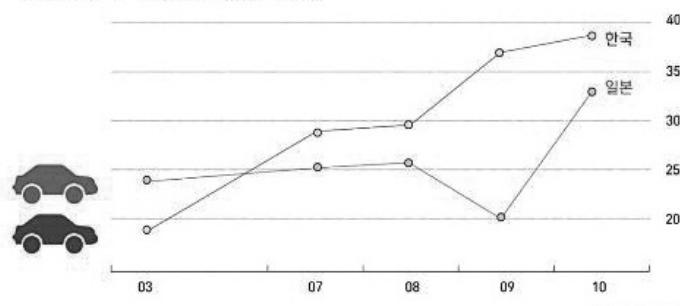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칠레 FTA

자동차 강국인 일본을 제치고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0년 자동차 수출은 11만2천대로 발효 이전 대비 약 5배 증가하고, 칠레에서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18.8%에서 39%로 증가하였습니다

칠레 자동차 시장 점유율 동향 단위 : %



(자료 : 한국자동차기술협회)

## 한·칠레 FTA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FTA 발효 이후 7년간 칠레 시장에 진출한 신규 기업에 의한 수출액 39억 달러 중 중소기업이 32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칠레 진출 신규 기업 수출액 비중

17%  
대기업  
83%  
중소기업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칠레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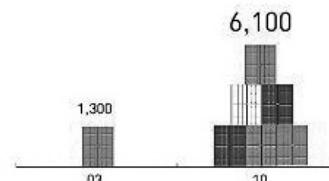


## 일자리가 2만2천명으로 약 4배나 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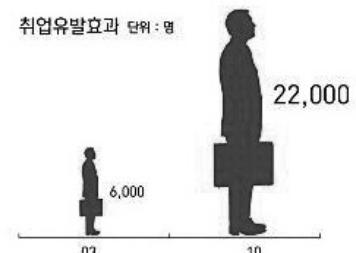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발효 전보다 생산유발액은 13억 달러에서 61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취업유발인원은 6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칠레 FTA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단위 : 백만달러



취업유발효과 단위 : 명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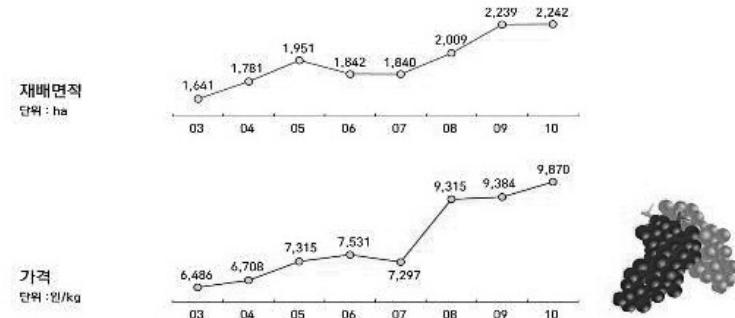
## 기 발효 FTA의 성과

### 한·칠레 FTA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는  
당초 우려와 달리 거의 미미하였습니다.**

국내 농가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국내 포도 가격은 상승하고,  
시설 포도의 재배 면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시설 포도 재배면적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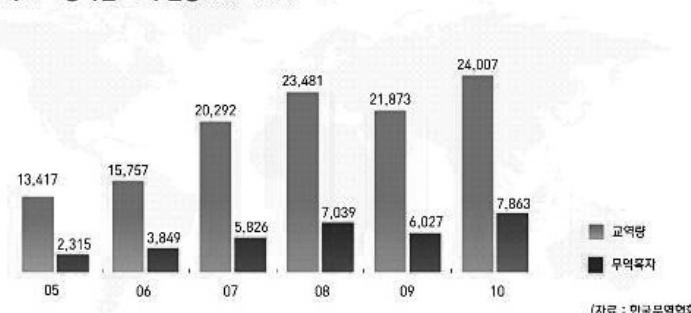
## 기 발효 FTA의 성과

### 한·싱가포르FTA

**FTA로 무역수지 악화를 우려하였으나,  
오히려 무역흑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고도로 개방된 국가이므로 FTA 발효(2006.3.2) 이후  
우리 측이 일방적인 관세철폐로 무역수지 악화가 우려되었으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발효 전 23억 달러에서 79억 달러로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 한·싱가포르 양국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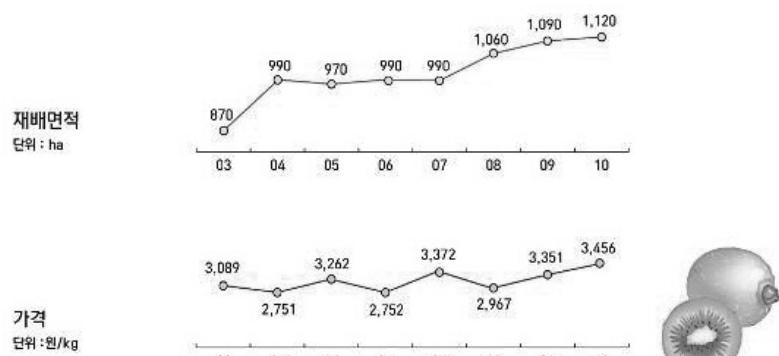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칠레 FTA

국내 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 우려와 달리 국내 키위 재배면적은 증가하였고,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 키위 재배면적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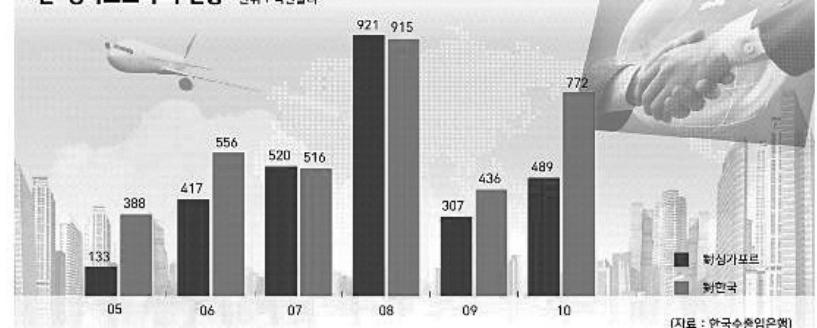


### 한·싱가포르FTA

**금융, 물류 등 서비스분야에서  
양국간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융,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對한국 투자가 증가하고, 운수·창고, 서비스 분야에서  
对싱가포르 투자가 증가하는 등 양국간 투자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 한·싱가포르 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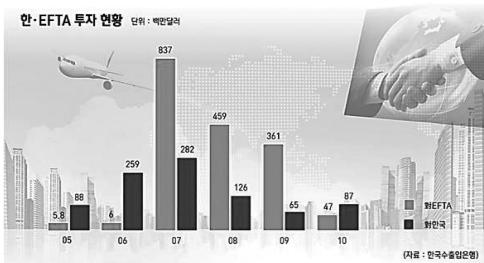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기 발효 FTA의 성과

### 한·EFTA

####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 양 지역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유화 확대 등으로 STX 그룹의 노르웨이 조선업체 인수, UBS의 하나 UBS자산운용 자문인수 등과 같이 양 지역간 투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한·인도 CEPA

#### 발효 1년 만에 무역흑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CEPA 발효(2010.1.1) 이후 對인도교역 규모는 1년 만에 40.8%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도 발효 전에 비해 19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 한·인도 CEPA 양국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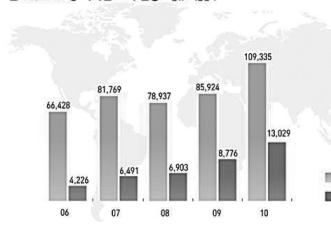


### 한·ASEAN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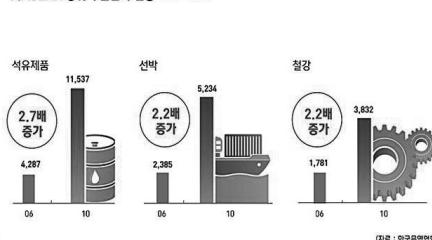
####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의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FTA 발효(2007.6.1) 이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도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 한·ASEAN 양 지역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對ASEAN 상위 수출품목 현황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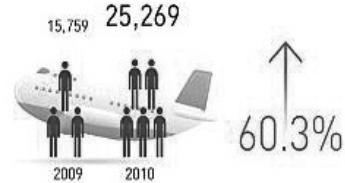
### 한·인도 CEPA

####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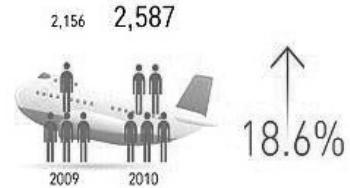
양국간 교역확대에 따라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상용 입국자수는 발효 전에 비해 60.3% 증가한 25,269명, 서비스 부분의 전문직 입국자수는 400여명이 증가한 2,587명입니다.

#### 한·인도 인적교류 현황 단위: 명

##### 상용 입국자수



##### 전문직 입국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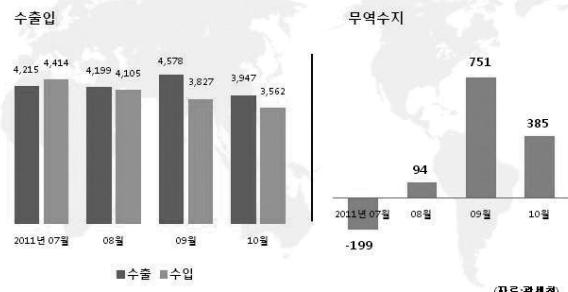
## 기 발효 FTA의 성과

### 한·EU FTA

#### 유럽發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FTA 발효(2011.7.1) 이후 4개월간 EU 수출은 169억 달러, 수입은 159억 달러로 1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FTA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률보다 높아 한·EU FTA가 수출촉진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EU 양 지역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FTA 수출입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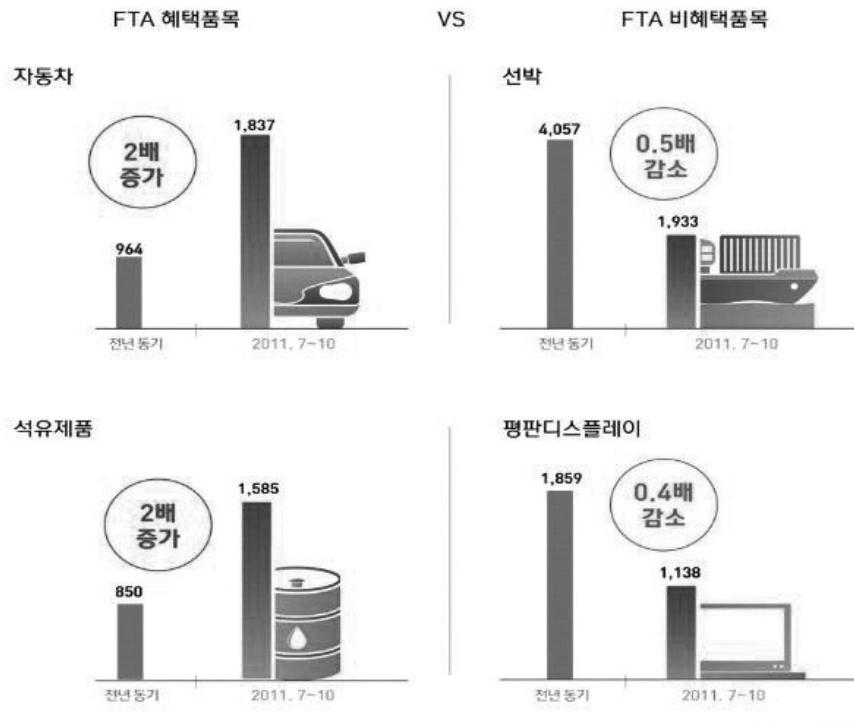
## 기 발효 FTA의 성과

### 한·EU FTA

#### FTA 관세 혜택품목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자동차, 석유제품 등 FTA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품목의 수출 증가가 비혜택품목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對EU 상위 수출품목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유럽산 냉동삼겹살, 와인, 아이스크림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품목들의 수입 증가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1 농축수산업

### 1-1. 한·미 FTA가 쌀농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우리의 주식인 쌀은 한·미 FTA 개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는 쌀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쌀은 우리의 주곡임을 감안하여,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모든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 ▶ 즉, FTA로 인해 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수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 정부는 FTA 대책과는 별개로 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먼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재배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유형		시작연도	대상농지 및 대상자	지원단가
쌀소득 보전	고정	2005	○'98~'00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경작자	○ 70만원/ha
	변동	2005	○ 벼 재배농가	○ 목표가격(170,083원/80kg) 과수획기 쌀값 차액의 85% 보전

- ▶ 들녘별경영체를 육성하여 단지화·규모화 및 공동 육묘·방제, 농기계 공동이용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도 추진 중에 있으며,
- ▶ 수요에 맞는 적정량을 생산하여 쌀값 안정과 수급 균형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1-2. 한·미 FTA로 인한 식량안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 ■ 한·미 FTA로 인해 곡물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 ▶ 사료곡물은 현재도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미국산 수입량이 증가할 요인이 없고,
- ▶ 밀·콩·옥수수 등 식용곡물도 우리나라의 소비특성 등을 감안하면 미국산 수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국내에서 주로 소비하는 풋옥수수는 신선도가 중요하여 미국산 수입이 어렵고, 콩은 국산과 수입산 시장이 구분되어 있으며, 밀은 현재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 ▶ 우리나라의 2010년 곡물자급률은 27%로 낮은 편이지만,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곡물자급률은 5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 정부는 2011.7월에 마련한 “식량자급률 제고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FTA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여건은 호전되었습니다.
- ▶ 정부는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품목별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품 목	'10년	'15년 목표치		'20년 목표치 (신규 설정)
		기준	재설정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26.7	25.0	30.0	32.0
식량자급률(식용곡물)	54.9	-	57.0	60.0
밀	1.7	1.0	10.0	15.0
조사료	82.0	85.0	87.0	90.0

- ▶ 앞으로 겨울철 유후농지에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확대, 배수개선·시설 현대화·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 전업농 육성 등의 식량자급률 제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3. NAFTA 체결후 멕시코처럼 우리도 농업붕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 ■ 농산물 수입국인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었으나, FTA가 발효된 이후 생산 및 재배면적 등에 있어 우려할 만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 미국과의 FTA 이후 채소류, 과일류 등은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천톤, 천ha, %]

품목	생산량			재배면적		
	1991~93년 평균(FTA前)	1994~2009년 평균(FTA後)	증가율	1991~93년 평균(FTA前)	1994~2009년 평균(FTA後)	증가율
오이	257.40	434.66	69.3	15.88	17.18	6.3
양파	715.50	1,145.55	60.1	40.19	50.22	24.9
레몬	772.21	1,570.99	103.5	89.98	121.75	35.4
파인애플	258.36	535.70	105.8	8.95	12.79	42.9
수박	426.43	856.63	101.2	39.59	39.97	0.9
옥수수	16,435.37	20,242.56	23.2	7,993.44	7,465.69	-6.6
보리	536.15	657.86	22.7	295.87	275.94	-6.7
밀	3,754.56	3,374.55	-10.1	953.49	728.17	-23.6

\* NAFTA(미국-캐나다-멕시코 FTA) 1994년 1월 발효

#### ■ 이는 멕시코 정부가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FTA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였기 때문입니다.

- ▶ 옥수수, 콩 등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주요 기초작물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며,
- ▶ 잠재적 비교우위를 가진 농민들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

#### ■ 우리 정부도 시설현대화 등 경쟁력 제고 및 피해보전직불제 등을 통하여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1-4.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정부의 농업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한·미 FTA 협정에는 농업보조금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어 한·미 FTA로 인해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 ▶ 특히,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의 주요 제소 요건이 될 수 있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에 대한 협정상의 의무가 적용 배제되도록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미 FTA 협정문 제11.12조 제5항 나호 : 보조금의 경우 투자 챕터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협정상의 의무가 적용 배제됨을 명시

### 1-5. 정부는 구제역 및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을 양돈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 국책연구소 공동연구 결과 한·미 FTA 이행시 양돈부문 생산액은 5년차에 1,640억원, 15년차에는 2,06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 '10년도 국내 양돈생산액은 5조 3천억원으로 발효 5년차의 피해 추정액은 '10년도 생산액의 약 3% 수준입니다.
- 정부는 한·EU, 한·미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양돈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돈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종돈개량을 통한 생산성 확대, 농가 컨설팅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 ▶ 양돈농가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 있는 사료 보급 및 사료원료 무관세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며,
  - ▶ 생산자단체 중심의 축산통합경영체(대형 Packer)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 양돈은 1999년에 일본 등으로 돼지고기 332백만불(82천톤)을 수출한 저력이 있습니다.
  - ▶ 정부는 양돈산업이 조속히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산업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1-6. 한·미 FTA와 미국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은 별개입니다.

-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은 위생·검역에 관한 문제이므로 한·미 FTA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한·미 간에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서 한·미 양국은 동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미측에서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없는 상황입니다.
  - ▶ 정부에서는 미국 측이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수입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상에 임할 예정입니다.
  - ▶ 특히, 동 위생조건상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 부칙 제 2조제1항: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 제 25조: 양측은 동 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에서 7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
- 부칙 제 7조: 우리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함

### 1-7. 정부는 쇠고기 수입 증가에 대비해 한우 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쇠고기의 관세율(40%)은 15년간 매년 약 2.7%씩 감축되어 쇠고기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1,040억원, 10년차에 2,463억원, 15년차에는 4,43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 '10년도 국내 쇠고기 생산액은 4조 9천억원으로 발효 5년차의 피해추정액은 '10년도 생산액의 약 2% 수준입니다.
- 국내 소비자는 한우에 대하여 안정적인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량의 대폭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입 쇠고기는 시장이 분화되어 있어 한우와 경쟁하기 보다는 미국·호주 등 수입국가간 경쟁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품질 쇠고기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한우 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현재 과잉인 한우 사육두수를 적정사육두수로 유지하여 수급과 소값을 안정시키고,
  - ▶ 브랜드 경영체 육성·지원을 통한 우수 브랜드 육성 및 한우 출하월령 단축을 위해 초음파 육질 진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 또한, 유전적으로 우수한 한우 개체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소독·방역시설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가축질병에 대응하며, 사료작물 재배 확대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 ▶ 아울러,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1-8. 정부는 낙농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 결과 한·미 FTA 이행시 유제품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297억원, 10년차부터는 연간 430억원 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한·EU, 한·미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젖소 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 노후화된 축사시설 현대화, 젖소개량, 농가 컨설팅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 ▶ 낙농가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육성 등을 추진하며,
  - ▶ 전국단위 수급관리 및 집유일원화로 균형적인 수급 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매년 발생하는 잉여원유를 저가의 가공원료유로 공급하는 등 종장기적으로 200만톤 수준의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1-9. 정부는 닭·오리 등 가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책연구소 공동연구 결과 한·미 FTA 이행시 닭고기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589억원, 10년차부터는 연간 1,087억원 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 '10년도 국내 닭고기 생산액은 2조 1천억원으로 발효 5년차의 피해추정액은 '10년도 생산액의 약 2.7% 수준입니다.
- 정부는 한·EU, 한·미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닭·오리 등 가금 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닭·오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환기, 온도, 사료배급시설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방역을 강화하고,
  - ▶ '16년까지 난계대전염병과 뉴캐슬병 근절을 위해 종계·부화장 등에 대해 연 2회 일제조사를 하고, 검사질병 대상도 확대하며,
    - \* 검사결과 양성발생 시 계군 이동제한, 종계사용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
  - ▶ 종계장에 대해서도 시설을 현대화하여 우수한 병아리를 공급하고 대형닭(2.5kg 이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편,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12년) 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 ▶ 가금 사육농가와 계열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권리의무, 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등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국회 심의중)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1-10. 정부는 감귤의 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온주밀감류는 미국의 주 생산 품종이 아니므로 감귤 농가들이 염려하는 것 보다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수입오렌지로 인한 일부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오렌지 수입량은 현재 연간 10만톤 수준이며, 미국산 비율이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 미국산 오렌지의 주 수입시기는 3~5월까지이고, 제주산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계절관세가 적용되므로 현행관세(50%)를 유지하면서 일부 TRQ 물량만 제공되기 때문에 오렌지로 인한 제주산 감귤의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TRQ : 2,500톤 제공(매년 3%씩 증량)
  - ▶ 다만, 3~8월까지는 한·미FTA 이행 첫해의 관세가 30%부터 시작하여 7년에 걸쳐 철폐되므로 일부 만감류 등 시설감귤류와 출하시기가 겹치는 일부농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한 감귤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귤경쟁력제고 및 유통개선 등에 대한 사업(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지원건립 등)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사업비도 수요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1-11. 한·칠레 FTA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우리 포도농가는 건재할 것입니다.

- 포도는 연간 35천톤 내외가 수입되고 있으며, 칠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국산은 10% 정도인 3~4천톤 수준입니다.
  - ▶ 미국산 포도의 주수입시기는 9~11월이나, 국산 포도가 출하되는 5월부터 10월15일까지는 현행관세(45%)가 1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 미국산 포도는 주로 청포도 계통이 수입되고 있으나, 국내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 또한, 관세가 낮아지면 칠레산과 가격경쟁력이 생겨 칠레산 수입량 일부가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04년 한·칠레 FTA 당시에도 과수농업인들은 칠레산 수입과실이 국산 과실시장을 점령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
  - ▶ 그러나, 정부에서 1조 2천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하여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한·칠레 FTA 이전보다 생산성 향상(15.9%), 노동력 감소(10.4%), 경영규모 확대(8.6%) 등 과수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 ▶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시선포도·키위의 면적이 증가(28~50%)하고 가격이 상승(15~77%)한 사례를 감안할 때, 정부와 농업인이 노력한다면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1-12. FTA에 따른 피해, 충분히 보전해 드립니다.

#### ■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 (대상품목) 한·칠레 FTA 대책에서는 대상품목이 시설포도·키위였으나, 한·미 FTA 대책을 통해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 (지급기준) 가격하락의 피해는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한·미 FTA를 계기로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여 발동기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기준가격: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 85% (한·칠레 FTA 대책 당시 80%)

- ▶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9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한·칠레 FTA 대책 당시 80%)

- ▶ (시행기간) 10년(2021.6.30일까지)으로 한·칠레 FTA 당시 7년간(‘04~‘10년) 인데 비해 시행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 FTA 이행으로 대상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품목별로 3년치 순수익액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 (대상품목) 한·칠레 FTA 대책에서는 대상품목이 시설포도·키위·복숭아였으나 금번 대책을 통해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 (지급기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 (시행기간) 폐업지원제도는 2016.6.30일까지 시행됩니다.

#### ■ 직접적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이외에도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 체질개선 사업 등을 통한 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13. 농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어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수산물의 경우 한·미FTA에 따른 피해가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 ■ FTA에 따른 우리어업의 피해대책으로는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은 물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원양) 영세 원양선사의 규모화 된 경영을 위한 관리회사 운영, 노후어선에 대한 설비 교체 등 생산설비 현대화 지원

\* 어획물 수집·보관·판매 대행 및 공동 운반선 운영 시스템 구축  
\* 고부가가치 명태 생산을 위한 원양어선 급냉시설 개조 등

- ▶ (연근해)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등을 통한 유통체계혁신 및 에너지 절감형 어구개발 지원 등의 경영지원, 경영체 육성

\* 오징어 어선의 에너지절약형 집어등(集魚燈) 기술개발 지원  
\* 게류(자망) 및 가자미, 돔류(대형트롤, 저인망) 등에 대해서는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추진

- ▶ (양식) 수출 주력품목인 활 넘치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뱀장어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

\* 육종넘치 품종개발, 활어 수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1평당 생산능력 : 순환여과식(300kg), 기존 양식시설(60kg)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1-14. 폐업지원을 받아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동일 품목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은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이 가능하므로 다시는 농어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대해서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이 가능합니다.
- ▶ 다만,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같은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다른 분야로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의 농업인들에게는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제도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에 대해 ha당 연 3,000천원을 경영이양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 (농지연금) 농업소득 외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폐업지원을 받은 고령의 농어업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15. 우리 농업의 미래 –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함으로써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 ▶ 이를 위해 축산·과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과 농식품분야 R&D 투자를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 농업용 시설현대화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겠습니다.
  - ▶ (생산성 향상) 가축폐사율(19.5%→10%), 모돈당 출하수(15두→22두), 고추생산(232kg/10a→630kg/10a), 과수노동력(10%절감) 등
  - ▶ (수출확대) 농식품 수출액(55억불→142억불)
-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전략적 수출 및 수입대책 품종 20개 개발, 10대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개발, 자동화 기술 등을 통해 종자수출 확대 및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 종자수출 : '30년 50억불 수출 달성('10 : 0.25억불)

\* 기술수준 : '17년 세계 최고 대비 85%'('09 : 67%) 달성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1-16. 우리 어업의 미래 – 한·미 FTA를 기회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이 예상되는 어종이나 품목은 명태 등 우리 원양 어업에서 잡는 어종들로서 원양어업과는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되나, 연근해 및 양식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예상되는 어종이나 품목은 관세철페 시기를 최대한 장기화 (최대15년: 명태)하여 우리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 WTO/DDA 등 개방화는 우리나라가 살아가기 위해 부득이 겪을 수 밖에 없는 국제적 대세임을 고려할 때 FTA를 위기보다는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어업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 ▶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 통조림 등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 ▶ 한·미간의 어업분야 협상을 통해 우리 어선의 러시아, 미국 수역 연계조업 방안 모색으로 우리 어선의 미국어장 진출은 물론 물류비용 경감이 예상됩니다
  - ▶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어업도 무한 경쟁체제에 대비한 경쟁력확보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양) 영세 원양선사의 규모화된 경영을 위해 관리회사 운영, 노후어선에 대한  
설비 교체 등 생산설비 현대화 및 규모화

\* (연근해)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등을 통한 유통체계혁신 및 에너지  
절감형 어구개발 지원 등의 경영효율화

## 2 중소기업·소상공인

### 2-1. 한·미 FTA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친서민 정책입니다.

- 미국의 연간 수입시장은 '10년 기준으로 우리돈 약 2천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로서 단일국가로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 ▶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넓어질수록 그만큼 생산 확대 및 소득 증대의 기회가 커집니다.
-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은 8만여개에 이르며, 매년 3~4천개의 중소기업이 새롭게 수출기업화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확대는 이들 수출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이며, 고용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아울러, 더욱 싼 가격에 미국산 수입 원재료, 부품 등의 도입이 가능하여 가공 후 수출 또는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종 제품 가격경쟁력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직접 수출은 아니지만, 대기업 등에 납품을 통해 최종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이들 품목의 수출증대로 FTA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10년 기준 약 5,3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영역이 확대되어(20만불→10만불 이상)
  - ▶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거래가 가능하게 된 만큼 이 또한 우리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부는 FTA로 확대된 중소기업의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대미 수출마케팅 지원, FTA 정보 제공 등을 더욱 강화하여
  - ▶ 우리 중소기업이 고질적인 대기업의 하청 그늘에서 벗어나 수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2-2.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거의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한·미 FTA 때문에 자영업자가 몰락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등 유통업분야는 '96년 WTO에서 이미 개방되었고, 이후 한·미 FTA를 포함한 여러 FTA에서도 비슷하게 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 ▶ 과거에 자영업자가 크게 어려웠던 것은 시장개방의 영향보다는 '97년 IMF 구제금융, '02년 카드부실 사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때문이었습니다.

\* 자영업자의 시기별 변화 추이(만명)

'97년 IMF 구제금융	('96) 571 → ('97) 590 → ('98) 561
'02년 카드부실 사태	('02) 619 → ('03) 604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08) 597 → ('09) 571 → ('10) 559

- ▶ 우리나라 유통산업도 이제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월마트나 프랑스 까르푸는 우리나라의 토종기업과의 경쟁 결과, 결국 국내에서 철수하였습니다.
- ▶ 이러한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미 FTA로 인해 자영업자가 몰락한다는 주장은 매우 과장된 것입니다.

### ■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경제의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정부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급격한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유통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SSM 규제법을 마련, 시행 중입니다.

▶ 아울러 치열한 경쟁, 소비 부진 등 외부적 요인 속에서 자영업자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 골목슈퍼와 전통시장의 현대화, 온누리 상품권 등 중소상점에 대한 소비진작책 등을 쓰고 있으며, 그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억원): ('09) 104.6 → ('10) 753.3 → ('11.11) 2,029.5

\* '08~'11년간 소상공인 · 전통시장에 총 3.2조원 지원

▶ 이번 FTA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확대,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확충 등 '12년 총 3,124억원 추가 지원 논의 중

#### 〈 골목슈퍼와 자영업자 성공사례 〉

##### ○ (경남 김해, 나들가게 A점) 편리한 쇼핑 매장으로 변모하여 매출 3배 증가

- '09.3월 슈퍼를 개업하였으나 대형마트 입점으로 월매출이 1,500만원 미만으로 급감하고, 주변 소형 슈퍼가 연쇄적으로 폐점
- '10.4월 나들가게에 선정되어 POS 구축, 상품구성 다양화, 특성에 맞는 상품진열 등을 추진한 결과, '10.8월 기준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

\* 매출액(만원) : ('09.3) 1,500 → ('10.8) 4,800, 매출이익 : ('09.3) 150 → ('10.8) 860

##### ○ (경남 울산, B 세탁소) 차별화된 세탁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확보

- '09.12월에 개점하였으나, 주변의 여러 세탁소 등과 경쟁이 치열하고, 인근 대형마트 내 세탁소와 가격경쟁력 확보가 곤란
- 맞벌이 고객을 위한 세탁물 수령안내·기간배달 서비스, 고급의류 세탁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매출액이 3배 증가

\* 매출액(만원) : ('09.2) 300 → ('10.9) 900, 매출이익 : ('09.2) 270 → ('10.9) 800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2-3. 한·미 FTA에 따른 기업 피해,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우선,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을 위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경쟁력 저하 업종 및 품목의 사업을 축소하고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 사업전환자금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융자 포함) : ('12안) 1,600억원

### ■ 특히, 피해 업종의 경영안정 및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 FTA에 따라 일시적 경영애로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편성하고,  
\* 긴급경영안정자금 : ('11) 2,200억원 → ('12안) 2,500억원(13.6%↑)
- ▶ 신보·기보 및 지역신보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12년 보증공급 규모 : 신·기보(54.2조원), 지역신보(15.1조원)

### ■ 한편, 미국 등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를 보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위한 R&D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 의료기기, 정밀기계, 화학 등 대미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별도의 수입대체 전용 R&D자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 ▶ R&D 지원과 더불어, 대미 수출품 생산 중소기업의 인증마크(UL 등) 획득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3 제조업

### 3-1. 수출 일등 공신인 자동차는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을 줍니다.

-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에 부과되던 2.5%의 관세가 4년 후 일괄 철폐됩니다.
- ▶ 미국시장에서의 우리 주력품목인 중소형차(美 자동차 시장의 38.2%)는 시장점유율 1위인 일본 제품과 근소한 가격차이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 국산차 및 일본차 미국시장 가격비교 (2011년 기본모델 기준, 출처 : Kelly Blue Book)  
– 현대 Accent (1.6) US\$13,846 vs 도요타 Yaris (1.5) US\$14,019 → 1.25% 차이  
– 현대 Sonata (2.4) US\$19,039 vs 도요타 Camry (2.5) US\$19,580 → 2.84% 차이

- ▶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절감은 우리 자동차의 현지시장 공략에 큰 플러스요인이 되어 더욱 많은 우리자동차를 미국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자동차 수출확대는 수출기반의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 ▶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보다 더 큰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단위: 100만불]

	수출	수입	무역수지
대세계 교역현황	466,384	425,212	41,172
자동차(부품 포함)	54,374	8,488	45,886
대미 교역현황	49,816	40,403	9,413
자동차(부품 포함)	10,861	703	10,158

- ▶ 또한, 우리 자동차의 해외수출이 활발해지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3-2. 자동차 부품의 미국 관세가 사라지면 우리 중소업체들의 경쟁력은 더욱 올라갑니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산업은 5,000여개 업체, 30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10년 1차 납품업체수는 899개로서 대부분(86.8%)이 중소기업임

- 한·미 FTA발효에 따른 미국측 수입관세(4%수준) 즉시 철폐는 자동차부품 생산 5천여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10년 영업이익률이 4.1% 수준인 우리나라 중소부품업체들에게 최대 5.7%의 수입관세 철폐는 경쟁국들보다 추가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FTA는 우리 부품업체가 해외 선진 업체 대상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억불) : ('06)25.9→('07)28.4→('08)27.0→('09)21.3→('10)41.2

▶ GM, Ford 등 세계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계열화를 따지지 않고 품질과 가격 좋은 부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 부품업체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KOTRA의 미국 주요 바이어 인터뷰 결과, GM, Ford, Delphi 등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산 부품 구매 확대계획인 것으로 파악

▶ 단기적으로는 샤시부품과 모듈, 공조장치 등과 같이 현재 수출이 활발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향후 더욱 많은 품목과 기업에서 수출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3-3. 섬유는 미국시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미국 섬유시장은 EU에 이은 세계 2위의 거대 수입시장으로, 수입규모는 단일국가 중 가장 많은 933억 달러(美상무부, 10년 기준)입니다.

▶ 섬유분야의 평균 13.1%(최대 32%) 관세가 폐지되면,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이탈리아産 섬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생겨 대미수출과 우리나라 섬유의 미국내 시장점유율을 증가가 예상됩니다.

\* 대미 섬유수출 : '10년 전체 139억 달러 중 대미수출은 12억 달러(8.8%)

\* 미국 섬유시장 점유율(%) : (1위)중국 41.2, (2위)베트남 6.7, (3위)인도 5.8, (4위)인니 5.0, (5위)멕시코 4.8, (6위)방글라데시 4.4, (20위)한국 0.9

- 우리나라 섬유분야 주력 수출품목의 상당수가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 섬유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 '05년 섬유쿼터 폐지이후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저하로 대미 수출이 급격히 감소(단위: 달러) : ('03)30억 → ('05)23억 → ('07)17억 → ('10)12억

▶ 고관세인 의류분야의 경우 인조스웨터(32.0%)는 즉시, 남성면셔츠(19.7%), 여성면바지(16.6%) 등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확대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 여성복에 주로 사용되는 실을 생산하는 A사의 경우, 발효 후 7.5%의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약 8억원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 예상

\* 니트의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편직물 생산기업 B사의 경우 관세(10~12%)가 철폐되면 수출단가 절감(4.57\$/kg→4.02\$/kg)으로 대만(5.98\$/kg)산과의 가격격차 확대, 저가 중국산(2.20\$/kg)제품과 가격격차 완화로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 국내 의류수출이 증가하면 영세사업체인 봉제업체들의 일감이 증가하여 서민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3-4. 일반기계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영역이 더욱 확대됩니다.

- 평균 1.7%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일반기계 분야에서 연간 약 2.9억불의 대미 수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 A사 공작기계 경우 미국 관세(4.2%)가 철폐되면 수출가격 85,700불이 82,000불로 인하되어 일본 OKUMA사의 91,500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

- ▶ 아울러,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10년 기준 약 5,3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영역이 확대(20만불→10만불 이상)되어, 대미 시장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입니다.

\* 미국 조달시장에서 국제입찰의 기계류 규모 74억불이며, 향후 엔진류, 펌프 등 특수목적용 기계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유망

- 또한, 주요 기계장비 및 필수 부품의 수입단가가 인하되어, 생산원가 경쟁력 제고와 함께 대일 의존적인 생산구조 탈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완제품 생산을 위한 부분품 수입이 연간 7천만불(무관세품목 제외시 4.5천만불)에 달하는 B사는 관세 철폐시 300만불의 원가절감 효과 기대

### 3-5. 철강은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의 수출도 확대됩니다.

- 주요 철강 제품은 '04년부터 무세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에 따른 산업피해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 '94년 WTO가 출범할 때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EU, 스웨덴 등 6개국은 '04년부터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철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MSA :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 자동차, 기계, 조선과 같은 철강 소비산업의 대미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철강 제품의 간접 수출도 증가할 것입니다.

▶ FTA 체결로 자동차, 전자 등 철강 소비산업의 대미 수출이 확대되면, 소재인 철강의 수출 확대도 기대됩니다.

\* 철강 제품의 대미 간접수출 : 연간 3,273만불이 증가할 전망 (KIET)

- 동,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 범용 제품의 수출이 증가됩니다.

▶ 동봉, 동관, 알루미늄 제품 등은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일본에 비해 우리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 동관(8,274불/톤)의 경우, 관세(3%) 철폐로 가격이 약 248불/톤 하락, 중국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첨단소재의 수입선이 다변화되어 부품소재의 對日 무역역조 현상이 개선될 것입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3-6. 화학분야의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 합성수지(ABS 수지, PP, PS) 등 석유화학 범용제품은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 ▶ ABS, PP, PS는 대미 주요 수출품목으로 FTA로 관세가 철폐된다면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 ABS 수지(2,347불/톤)의 경우, 관세(6.5%, 3년) 철폐로 가격이 153불 하락, 일본산(2,691불/톤) 대비 가격경쟁력 증대 ('10년 평균 수출가격 기준)

#### ■ 비교적 관세가 높은 염료 등의 화학제품은 관세철폐로 수출이 확대될 것입니다.

- ▶ 미국은 화학제품에 대해 0~5% 수준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염료 등 일부에 대해서는 5%대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또한, 기술협력 · 이전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 ▶ 상호 Needs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개발, 기술교류 등 미국과의 산업간 전략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7.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전자 · IT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 우리나라 전자 · IT제품의 對미 수출은 중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하며, '11년에는 186억불로 전자 · IT 총수출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망)	
						전자IT(억불)	전년대비
수출	전자IT(억불)	1,301	1,312	1,210	1,539	1,587	3.1
	對미(억불)	154	170	160	185	186	0.5
	비중(%)	11.8	12.9	13.2	12.0	11.7	-

- ▶ 현재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국들 간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을 진행 중이며, 특히 일본과는 기술경쟁, 중국과는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이제 한 · 미 FTA 체결로 미국 시장의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전자 · IT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일본, 중국을 제치고 우리 제품이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 ▶ 대형냉장고(1~1.9%), 에어컨(1~2.2%)과 같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FTA 최대 수혜 제품이라 할 수 있으며,
- ▶ TV(3.9~5%)의 경우 3~5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어 對미 수출이 증가하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평판TV 북미시장 점유율('11.3분기) : (일본) 43.3% (한국) 40.8% (미국) 9.8% (중국) 1.1%

####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전자 · IT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기업 및 제품의 홍보활동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 특히, 우리 중소 · 중견기업들이 참가하는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로드쇼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4 의료·제약

#### 4-1.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의료비가 폭등하지 않습니다.

■ 한·미 FTA에서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 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기초의료보장 등 공적 의료 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료행위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비는 매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계약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고 있고,

-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어 수시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정부, 공급자,가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있습니다.
- ▶ 또한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진료비 및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한·미 FTA로 진료비 및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 4-2.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현재처럼 유지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13 장 금융서비스

제 13.1 조 적용범위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여 우리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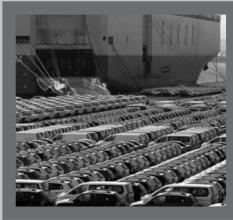
한·미 FTA 부속서Ⅱ 대한민국 유보목록 Ⅱ-가 35번째 유보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일부에서 주장하는 미국 Centurion社의 캐나다 정부에 대한 소송 사례는 건강보험에 아니라 의료시설 설립과 관련한 사안이며

▶ 캐나다 정부가 NA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방하였기 때문에, 한·미 FTA와는 다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민 가입 및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4-3.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결국 우리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 존속기간 내에 시판하려는 복제약에 대해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 현재 대부분의 복제약은 특허기간 만료 이후에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일부 복제약의 경우 시판방지 조치에 따라 현재보다 허가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에 허가절차가 진행됩니다.
  - ▶ 따라서 국내기업의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우리 제약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특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시판방지 조치 조항은 앞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됩니다.
- 정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등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4-4. 영리병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은 변함없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허용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 한·미 FTA 협정문의 의미는 내국인에 대하여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 협정문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것이지, 아무런 규제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또한,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관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법률들과 우리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영리병원도 「의료법」 제 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할 것을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5 서비스

#### 5-1. 통상적인 인터넷 사용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 ■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 검색, 허락받은 다운로드 등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를 도입하나, 국민의 문화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 ▶ 또한 2004년 조사결과 세계 84개국에서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이 위축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UCC 등 개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 정부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조화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 5-2. 영화관에서 캠코더를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입니다.

##### ■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영화 도촬(몰래 촬영) 행위가 금지됩니다.

- ▶ 제작비용이 막대한 영상저작물을 몰래 촬영하여 배포·전송하는 경우에는 우리 영화산업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도촬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 ▶ 영화 도촬은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그러나,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만 해도 도촬 미수로 처벌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 한·미 FTA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볼 때, 복제(촬영)나 전송의 목적이 없는데 단지 캠코더를 소지했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 ▶ 영화 관객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은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결코 위축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5-3. 그동안 국내 법조계는 법률시장 개방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 ■ 3단계 개방 등 점진적 개방을 통해 국내로펌이 법률시장 개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법률시장 개방은 5년에 걸쳐 3단계로 개방하여 국내로펌이 시장 개방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3단계 개방 이후에도 국내변호사의 완전한 고용 및 국내로펌의 흡수 합병은 제한되어 국내로펌이 외국로펌에 인수되지 않습니다.

#### ■ 국내로펌은 많은 분야에서 외국로펌 못지않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 법률시장 개방 논의는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와서 그동안 국내로펌은 전문화, 대형화를 통해 이에 대비해 왔습니다.
- ▶ 지적재산권, 중재, 공정거래, M&A, 증권분야 등 국내로펌이 외국로펌 못지않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분들이 많습니다.

### 5-4.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우리 금융시장의 안전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이미 대부분 개방되어 있습니다.

- ▶ 우리 당국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추가적 금융시장 개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 추가로 개방된 분야는 보험중개업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도입,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등이며, 이 또한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 ※ 신금융서비스란?

한국(미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미국(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 ※ 신금융서비스 허용 조건은?

신금융서비스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금융회사의 현지법인/지점을 통해서만, 현행 우리 국내 금융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개별 상품별 심사를 실시하는 허가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 또한, 건전성 감독을 위한 예외 조치를 언제든지 시행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우리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5-5. 방송서비스가 개방되더라도 우리의 문화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 한·미 FTA에 따른 방송분야 주요 개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49%)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행하는 간접투자는 기존 49%에서 발효후 3년내에 100%까지 허용됩니다.  
\* 그러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일부 PP(보도·종편·홈쇼핑PP)는 간접투자 100%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비지상파(SO·PP·위성 등)의 국내불 편성쿼터가 영화는 기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기준 35%에서 30%로 축소됩니다.

#### ■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완화는 궁극적으로 국내 방송콘텐츠산업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투자여력이 미흡한 중소 PP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그 결과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미 FTA 영향분석 결과 PP시장 일부개방에 따른 시장확대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3억원 증가, 소득은 연평균 90억원 증가 예상('11.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PP의 자본력은 취약한 실정으로, '10년말 기준 179개의 PP중 매출액 50억 미만인 사업자가 54%(97개) 차지'

#### ■ 비지상파(SO·PP·위성 등)의 국내불 편성쿼터가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일부 축소된 것에 따른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한·미 FTA 결과 국내불 편성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감소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52억원으로 분석됨('11.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다만, 편성쿼터 완화로 중소 PP와 독립제작사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 정부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지원센터' 건립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습니다.

### 5-6. 통신시장 개방, 산업생산과 소득증대가 예상됩니다.

#### ■ 한·미 FTA에 따른 통신분야 개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대로 49%를 유지하게 됩니다.
- ▶ 다만, 외국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행하는 간접투자는 기준 49%에서 발효후 2년내에 100%까지 허용됩니다.  
\* 외국인의 간접투자 100% 허용 대상에서 KT와 SKT는 제외되었으며,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익성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 ■ 한·미 FTA로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가 100% 허용되었으나,

- ▶ 유무선 최대 사업자인 KT와 SKT가 제외되었고, 이외의 통신사업자도 엄격한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우리 기간통신산업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KT·SKT의 시장점유율('10년말 기준) : 이동통신 84.8%(SKT 54.5%, KT 30.3%), 시내전화 84.6%(KT), 초고속인터넷 45.0%(KT)

※ 공익성 심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의 행위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 외국인투자 확대조치로 통신서비스 산업 전체적으로는 자본유입에 따른 생산과 소득의 증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영향분석 결과 기간통신사업자의 간접투자 완화에 따라 외국자본의 진입 확대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710억원 증가하고, 소득은 연평균 310억원 증가 예상됨('11.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6 소비자

#### 6-1. FTA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한층 커집니다.

##### ■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가 받는 혜택도 다양해집니다.

- ▶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상품의 국내가격이 낮아지고, 국내상품과 대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상품의 가격까지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더불어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상품이 낮은 가격에 들어오면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됩니다.

##### ■ 이러한 소비자 혜택은 아직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 농수산물과 같이 소비자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품목은 개방에 취약한 우리 농어가에게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공산품보다 개방 폭을 낮춘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 ▶ 또한 일부품목의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점도 원인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시장의 선진화,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와 함께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미국까지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특혜무역의 비중은 37.9% 까지 확대되며, 따라서 의류 등의 저가제품부터 자동차 같은 고가제품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한층 커질 것입니다.

#### 6-2. 미국산 돼지고기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 ■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삼겹살 소비량은 연 평균 9kg에 달하고, 삼겹살 수입량도 연간 9만톤을 넘고 있습니다.

- ▶ 삼겹살은 크게 생삼겹살과 냉동삼겹살로 구분됩니다. 생삼겹살은 냉동삼겹살에 비해 수입액은 작지만, 대부분을 캐나다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 ▶ 특히 미국산 생삼겹살은 수입 생삼겹살의 37.9%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생삼겹살의 상당량이 미국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생삼겹살은 22.5%의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높은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입가격에 관세가 포함된 삼겹살을 구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품목	관세율	수입 삼겹살의 시장점유율('10년)			
		캐나다	미국	EU	칠레
생삼겹살	22.5%	50.5%	37.9%	0.0%	9.4%
냉동삼겹살	25.0%	0.4%	2.0%	71.1%	23.7%

##### ■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어 미국산 생삼겹살에 부과되던 22.5%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완전히 철폐되면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미국산 생삼겹살과 같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냉장목살의 경우 '11.12월 현재 대형마트에서 Kg당 11,000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는데, 관세 22.5%가 완전 철폐 되는 시기에는 최종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5%정도 인하된 9,300원 내외로 낮추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가격인하효과는 관세철폐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유통마진 등의 변화에 따라 최종 소비자 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6-3. 더 낮은 가격으로 치즈를 맛볼 수 있습니다.

- 치즈는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표상품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한 치즈는 연간 2천억원('10년기준)에 달합니다.
  - ▶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수입하고 있고, 두 국가의 치즈 수입량(미국 4천만불, 뉴질랜드 5천만불)은 우리나라 총 치즈 수입량의 절반에 이릅니다.
- 치즈는 국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36%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한·미 FTA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우리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 한·미 FTA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선한 치즈, 블루바인 치즈, 체다 치즈 등 모든 종류의 치즈뿐만 아니라 버터, 밀크와 크림과 같은 유제품도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 ▶ 체다치즈는 현재 미국에서 대량 생산되어 연간 35억원 규모가 수입되고 있으며, 관세 36%가 10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 ▶ 일반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도 15년에 걸쳐 모두 철폐되며, 버터의 경우 최대 관세 89%가 10년에 걸쳐 철폐되고, 밀크와 크림에 부과되는 관세 36%도 10~15년에 걸쳐 모두 사라집니다.

### 6-4. 화장품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우리나라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입화장품은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 \* '10년 국내 화장품 시장은 7.9조원 규모(소비자가격 기준)
  - ▶ 특히, 미국산 화장품은 종전의 프랑스산 제품을 제치고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미 수입액은 2.3억\$ 규모에 달합니다.
- 한·미 FTA로 미국산 화장품에 부과되던 관세 8%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수입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 \* '10년 우리나라 화장품은 중국 등 총 195개국에 5.97억\$을 수출하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총 85개국으로부터 8.51억\$을 수입
  - ▶ 또한, 백화점을 통해 고가제품 위주로 수입·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로드숍, 통신판매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됨으로써, 소비자들이 미국산 화장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6-5. 값싼 미국산 의류를 나만의 스타일로 입을 수 있습니다.

- 섬유류는 우리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지만, 의류, 셔츠, 넥타이, 모자 같은 의류는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의류의 대미 수입액은 연간 8천만불 가량이며, 대미 수출액은 4천만불 가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 ▶ 특히, 미국산 의류(13%), 셔츠(13%), 넥타이(8%), 모자(8%)에는 8~1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가격에 관세가 더해져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해야합니다.
-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의류나 넥타이, 모자 등에 부과되던 관세가 즉시 사라집니다.

▶ 따라서 한·미 FTA로 의류에 부과되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다 저렴해진 가격으로 미국산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6-6.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 최근 와인 애호가가 늘면서 와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 미국산 와인은 국내 와인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 측면에서도 프랑스 와인을 능가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 와인은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관세 품목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최대 15%까지 가격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소비자 가격인하 폭은 수입와인의 유통단계와 업계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 주류수입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직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주세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결국, 한·미 FTA가 발효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되면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미국산 와인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6-7. 인터넷 쇼핑도 부담이 덜어집니다.

- 최근 온라인 쇼핑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의류, 가방 등을 직접 해외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오프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 ▶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상품을 구입할 때에도 동일하게 관세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주로 구입하고 있는 상품들은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지갑은 가벼워집니다.
  - ▶ 관세 8%가 부과되던 건강기능성 식품은 매년 약 1.6%씩 5년에 걸쳐 관세가 감축됩니다.
  - ▶ 또한 의류에 부과되는 관세 13%가 즉시 철폐되어 미국산 의류에 대한 수입관세 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온라인 해외 쇼핑의 가격부담이 경감됩니다.
  - ▶ 관세 8%의 핸드백도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사라짐에 따라 여성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 7 청년층 · 근로자

### 7-1. 청년층의 구직기회가 넓어집니다.

- 한·미 FTA로 해외시장이 개척되어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 영토가 넓어집니다.

\* 한·미 FTA 이행으로 **对美 무역수지(연평균 1.4억불 흑자)** 뿐만 아니라 **对 세계 무역수지도 확대(연평균 27.7억불 흑자)**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약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층 구직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동차,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남성의 취업 크게 증가, 고부가가치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크게 증가(직업능력개발원, 「FTA가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또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증가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 \*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 개선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

-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청년의 일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7-2. FTA로 유망한 직업분야가 늘어납니다.

#### ■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간 발전정도가 다른 산업과 직업이 연계됨으로써 유망한 직업분야가 새로이 만들어집니다

- ▶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분야, 서비스업에서는 방송, 통신,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유망한 직업군이 생겨납니다.

#### ■ 제조업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 공학기술자, 정비원,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제품 개발 설계 기술자, 전자제어계측 기술자 등이 유망한 직업으로 부상합니다.

- ▶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분야와 연계된 기계분야에서도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금형원 등이 유망한 직종으로 예상됩니다.

#### ■ 서비스업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컴퓨터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전문가\*,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안전문가, DB 관리자 등이 유망한 직업군으로 전망됩니다.

\* 컴퓨터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전문가는 한국의 직업지표

(2011, 직능원 “10년후 직업전망”)에서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조사됨

- ▶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자산 운용가, 투자 및 신용분석가, 기타 회계 및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이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이 밖에도 한·미 FTA는 상담전문가, 여행, 오락·게임 및 여가 관련 종사원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상 제시한 유망직업은 한국의 직업지표(2011)와 FTA가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2008)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음

### 7-3. 한·미 FTA 실직피해, 「FTA 신속지원팀」이 있습니다.

#### ■ FTA로 인한 실직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 FTA로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휴직·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 특히, FTA로 업종 전환을 하는 사업주에게는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주에게 지금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1년 지원

- ▶ 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위해 FTA 피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변화관리, 취업상담, 정보제공 등 신속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전직지원서비스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 FTA 피해 실직자에게는 진로상담·직업훈련·집중취업알선 등 3단계 종합고용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하고,
  - 이를 통해 FTA 피해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우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2단계	3단계
진로·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참여수당 월 최대 20만원	*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	*취업성공 수당 100만원

〈고용촉진지원금〉

\*1년 최대 860만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  
조건부수급자 동일한 수준)  
cf. 일반 지원 650만원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 특히, FTA 유망 분야로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지원, 「내일배움카드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등을 통해 최대 3년 훈련 가능(훈련수당 별도 지급)

- ▶ FTA 피해 실직자(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연장급여'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	비고
내일배움 카드제	○훈련비: 200만원 한도 ○훈련장려금: 월 11.6만원	※ 「훈련연장급여」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훈련비: 전액 ○훈련장려금: 월 31.6만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훈련지시가 이루어지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이후 지급 (구직급여 100%, 최대 2년)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	○훈련비 전액 ○훈련장려금: 월 11.6만원	

### ■ FTA 피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특화대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 ▶ 지역별 공모제로 시행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FTA로 구조조정이나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지역의 '고용관련 사업' (전직지원, 직업훈련 등)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 FTA 관련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부 고용센터(전국 청단위 47개소)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운영합니다.

### 7-4. 미국 전근비자 갱신기간이 연장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비자를 자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 ▶ 우리 파견근로자(전근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L비자의 유효기간은 현재 신설사업체의 경우 1년, 기존사업체의 경우 3년에 불과합니다.
- ▶ 이처럼 짧은 비자 유효기간으로 인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에게 짧은 비자발급 갱신에 따른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 ▶ 우리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L비자 유효기간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2007~2010 기업내 전근자(L) 비자 발급 현황 (미 국무부)  
– 한국 15,820 → 호주 9,679 → 싱가포르 2,154, → 칠레 1,617

#### ■ 정부는 2010.12월 L비자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을 미국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 ▶ 그 결과 신설사업체와 기존사업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에 대해 L비자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체 유형	L비자 유효기간	
	기존	연장 합의
기존사업체	3년	5년
신설사업체	1년	

- ▶ L비자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8 기타( ISD 등)

### 8-1. ISD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 ISD(Investor-State Dispute)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4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국제기구가 중재절차를 수행합니다.

- ISD는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반세기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발효중인 FTA와 투자협정 85개 중 81개에 IS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U 회원국들과는 한-EU FTA에서가 아니라 개별 투자협정을 통해 ISD를 반영

### 8-2. ISD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 '06~'11.6월 투자액: 한국→미국 346억불 >미국→한국 99억불

- ▶ ISD를 통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 ISD가 없으면 우리 기업은 미 국내법에 따라 50개주 지방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 ▶ 또한,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ISD는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가능성,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추세를 감안할 때 ISD는 더욱 중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 '06~'11.6월 투자액: 한국→세계 1,762억불 >세계→한국 634억불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8-3. 정부의 공공정책 자율권은 보장됩니다.

#### ■ 정부의 공공정책이 정당하고 미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경우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 특히, 공공정책상 필요한 분야는 협정문에 우리정부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
  -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은 ISD 예외 대상
  - 정부조달, 금융,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등 여러 분야의 정책권한을 확보
  - 교육 · 에너지 · 운송 · 방송 등 정부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44개 분야는 정부권한을 유보

#### ■ 따라서 ISD가 도입되면 정부의 정당한 자율적 규제권한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 예를 들면,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여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는 주장을 전혀 근거가 없는 왜곡된 주장입니다.

### 8-4. ISD 대상이 되는 간접수용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 '간접수용' 이란 정부가 직접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 투자자가 정부조치로 사실상 투자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상황

#### ■ 한·미 FTA에서 인정되는 간접수용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조치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except in rare circumstances)'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간접수용은 정부조치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 일 때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 ▶ 간접수용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멕시코에서의 Metalclad 사건은 NAFTA 분쟁사례 중 간접수용이 인정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 〈 Metalclad사건 개요 〉

멕시코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Metalclad사(미국계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쓰레기 매립장 영업에 필요한 모든 인가가 발급될 것이라고 보장하였으나, Metalclad사가 동 매립장 인수 및 처리시설 공사를 한 이후, 지방 정부가 허가를 거부하고 주정부가 해당 지역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 가치가 전면적으로 박탈되었는데도 멕시코 정부가 유효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이를 간접수용으로 판정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8-5. 중재판정부는 전문성을 지닌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 ICSID는 중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권위 있는 국제중재기구입니다. 전세계 147개 회원국을 둔 ICSID가 편파적인 판정을 내린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 ▶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는데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양측 합의에 의해 의장 중재인 1인을 선임합니다.
  - ▶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만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 중에서 임명합니다.
- 실제 NAFTA 사례 중 최종결정이 있었던 총 13건 중 9건이 양국 합의로 제3국인 중재인을 선정하였으며,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합니다.
  - ▶ 이 4건에 대해서도 미국측에 유리한 판정이 2건, 불리한 판정이 2건인 점을 감안하면 ICSID 중재판정부가 미국의 입김 아래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지금까지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의 판정결과를 보더라도 미국 기업의 패소(22건)가 승소(15건) 보다 많았습니다.
  - ▶ 또한, 한·미 FTA에서는 중재과정과 각종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투명성 조항을 도입하여 판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 8-6. ISD에 대한 우려, 지나친 기우입니다.

#### ■ 신희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 “사회주의 정부도 수용하고 있는데 주권을 빼앗는 것이라든가, 한·미 FTA가 을사늑약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11.4일 문화일보)
- ▶ “2006년에 ISD태스크 포스가 구성됐다.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등 20명 가량이 참여해 2~3개월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냈다”(11.2일 조선일보)

#### ■ 홍성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 “ISD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한 남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로 소송에 휩싸인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남미 국가들의 사례는 경제시스템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엔 적용하기 어렵다.”(11.4일 한국일보)

#### ■ 이재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 당시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무려 40여건의 ISD 제소를 당했는데, 아르헨티나는 당시 많은 기업을 국유화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한 자산을 다 박탈한 것이다. 그럴 경우엔 보상을 해 주는게 맞는게 아닌가?”(11.3일 중앙일보)



## 한·미 FTA의 분야별 영향 및 기대이익

### 8-7. 한·미 FTA는 공정한 국제조약입니다.

-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국내법과 한미 FTA 협정의 법적 효력이 다른 것은 양국 법률 체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를 두고 한·미 FTA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미국은 FTA 등 통상협정이 자국내에서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자국의 국내법(예: FTA 이행법안) 형태로 입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의 법률체계상 미국내에서 한·미 FTA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미국의 국내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 지난 7.7일 미 의회의 비공식 축조심사를 마친 한미 FTA 이행법안, 미국의 WTO 이행법안 및 기체결 FTA에도 동일하게 규정

### ■ 현실적으로 한·미 FTA와 미국법이 불일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미국은 개정이 필요한 자국 법령을 FTA 이행법안을 통해 빠짐없이 개정할 예정이며, 필요시 행정부는 추가적인 법령 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한·미 FTA 행정조치성명)

### ■ 만약, 한·미 FTA와 미국 국내법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 ▶ 미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와 한·미 FTA 제1장 제1.3조\*\*에 따라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 ▶ 우리나라는 미국에 협정이행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엔나협약 제27조 :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 한미FTA 제1장제1.3조 : 양당사국은 (중략)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별 첨

### 분야별 담당부서 연락처

분야	담당부서	대표 전화
농축수산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2-500-1708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042-481-4595
제조업	지식경제부 FTA팀	02-2110-4846
의료·제약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02-2023-7256
서비스	(저작권)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105
	(법률)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1
	(금융)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02-2156-9787
	(방송통신) 방통위 국제협력담당관	02-750-1717
소비자	기획재정부 조사분석팀	02-2150-5751
청년층·근로자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27
기타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1